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5월 05일 17시 28분



목차

목차	2
등록현황	3
보조금 결정의 변경 및 취소	3

보조금 결정의 변경 및 취소

2014.04.17 조회수 532 등록자 박종열

관리번호	전라남도 여수시-2013-0063
담당부서	회계과
상위법령	지방재정법 제17조
조례	여수시 보조금관리 조례 제10조
유형	4호 - 기타(부담금징수 등)
법령공표일	누락규제
존속기한	1998-04-04
규제시행/폐지일	1998-04-04

규제내용 제10조(사정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변경·취소) ①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이후에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.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한한다. 1. 천재지변 또는 기타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. 보조사업 계획상 예정된 토지 또는 기타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.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(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)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③제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.

목록

이전글

< 전라남도 여수시-2013-0061

다음글

전라남도 여수시-2013-0064 >

Yeosu Web Contents

